

#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김경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4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  
발 의 자 : 김경우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고병국, 권영희, 김기덕,  
김화숙, 오현정, 유 용,  
이영실, 이정인, 이준형,  
이호대, 임종국, 전석기,  
정지권, 정진술 의원(14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립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. 특히 2020년 1월 29일 「환자안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둘 수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(이하 “전담인력”이라 한다)의 자격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「환자안전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

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함(안 제5조제4항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환자안전법」, 「환자안전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「환자안전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환자의 보호 등) ① ~ ③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5조(환자의 보호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「환자안전법」 제12조 <u>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</u> <u>제2항에 따라 병원에 환자안전</u> <u>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</u> <u>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</u> <u>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.</u>